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6. 1.(월) 총 5매(본문 5)	
국토 교통부	항공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정희, 사무관 정재웅, 주무관 안승현 ·☎ (044) 201-4204, 4189, 4190
인천국제 공항공사	상업시설처	담당자	·처장 지희수, 팀장 신동익, 과장 이주영 ·☎ (032) 741-2218, 2219
한국 공항공사	항공영업실	담당자	·실장 손종하, 부장 송한규, 차장 문주희 ·☎ (02) 2660-2811, 2611, 2613
보 도 일 시		2020년 6월 1일(월)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(16:30분)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부, 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

- 대·중견기업 최대 50%, 중소·소상공인 최대 75% 임대료 감면
 -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(총 4,008억 지원효과)
 -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 8월까지(6개월) 연장, 체납연체료도 인하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,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구분환), 한국공항공사(사장 손창완, 이하)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지원대책 마련배경

-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(2.28.),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(3.18.),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(4.1.)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.

< 기존 지원방안(2.28, 3.18, 4.1) >

- ◆ (2.28) 중소·소상공인 대상 3월~8월 6개월간 임대료 25% 인하
- ◆ (3.18) 3월~5월 3개월간 무이자 납부유예
운항중단 공항의 중소·소상공인 임대료 100% 면제
- ◆ (4.1) 중소·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상향(25%→50%), 대·중견 20% 감면(3~8월)

- 그러나 기존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,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.

* (전년比 여객감소) 인천(국제선) : 2월 ▽42% → 3월 ▽90% → 4월 ▽97%
 한국(국내선) : 2월 ▽39% → 3월 ▽57% → 4월 ▽56%
 한국(국제선) : 2월 ▽63% → 3월 ▽98% → 4월 ▽100%

- 이에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항별 여객감소 추이와 업계의 임대료 부담·공항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.

지원대책 주요내용

< ① 임대료 감면을 상향 >

- 공항별 여객감소율(전년 동월대비)에 따라 대·중견기업은 최대 50%, 중소·소상공인은 최대 75%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.

*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동월 대비 60%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(3월~8월) 적용

- 현재 시행 중(3월~8월, 6개월)인 대·중견기업 20%, 중소·소상공인 50% 감면율을 확대하여,
- 전년 동월대비 여객감소율 70%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서 대·중견기업 50%, 중소·소상공인 75%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,
- 그간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.
- 이에 따라, 3월~8월까지(6개월) 기존 지원보다 약 2,284억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,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,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구분	감면율		감면금액 (기존 1,724억 → 변경 4,008억) + 2,284억
	여객감소율 40~70%	여객감소율 70%이상	
대·중견기업	20%(현행유지)	20%→50%	2,221억원 추가감면 (기존 1,497억 → 변경 3,718억)
중소·소상공인	50%(현행유지)	50%→75%*	63억원 추가감면 (기존 227억 → 변경 290억)

* 운항중단 공항(김포·김해 등 국제선, 무안·원주 등 국내선)의 중소·소상공인은 100% 감면

< ② 납부유예 연장, ③ 체납연체료 인하 >

- 현재 3~5월까지(3개월)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(3월~8월)로 연장하는 한편,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또한, 임대료 납부유예(3월~8월) 종료 이후,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하 (연 8%^{한국} ~ 15.6%^{인천} → 연 5%)하여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.

< 적용대상 >

-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, 식음료, 편의점, 렌터카, 서점,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,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·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.

기타사항

-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 공항공사의 금년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,
- 면세점 등 우리 공항의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, 1만 4천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·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50%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되었다.

- 이에,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등 간에 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.
-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“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이며, 금번 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”고 언급하며,
 - “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,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 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정재웅 사무관(☎ 044-201-4189), 인천국제공항공사 신동익 팀장(☎ 032-741-5390), 한국공항공사 송한규 부장(☎ 02-2660-26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